MOU(양해각서)

**(주) {{company1\_name}} 와 (주){{company2\_name}} 의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**

㈜ (이하 ‘갑’이라 함)과 ㈜ (이하 ‘을’이라 함)은 당사자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, 인터넷 사업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,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## 제1조 목 적

본 계약은 ‘갑’과 ‘을’의 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협력내용

본 양해각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{{condition1}}

{{condition2}}

{{condition3}}

## 제3조 분쟁해결

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,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.

## 제4조 의무사항

1)"갑" 과 "을"은 제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
2) "갑" 과 "을"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.

## 제5조 기밀유지

"갑" 과 "을"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.

## 제5조 제반 업무 연락

본 협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연락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문서는 인편 및 우편 그리고 팩스로 전달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.

## 제6조 계약의 해지

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‘갑’과 ‘을’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## 제7조 유효기간

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구체적인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효하다.

## 제8조 법적 구속력

본 업무협약은 양사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,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## 제9조 기타사항

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.

본 양해각서는 {{year}}년 {{month}}월 {{day}}일 2부를 작성, 날인되었으며,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갑: ㈜ {{company1\_name}} | 을: ㈜ {{company2\_name}} |
| 대표이사 {{company1\_ceo}} | 대표이사 {{company2\_ceo}} |